

지폐 유통의 법칙과 은행권 유통의 법칙*

최 진 배(경성대학교 경제학과)

1. 서론

1797년 은행권의 태환이 정지된 후 영국에서는 귀금속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귀금속이 유출입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그것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논쟁을 겪은 후 영국은 태환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태환이 재개된 이후에도 귀금속의 유출입 현상은 사라지지 않았다. 귀금속의 유출입 현상을 예방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은행법이 제출된 것을 계기로 영국에서는 논쟁이 다시 시작되었으며, 논쟁 이후 영국은 태환은행권의 발행을 이전보다 엄격하게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두 차례의 논쟁과정에서 불환은행권과 태환은행권 모두를 가치표장으로 인식한 지금논자와 통화주의자는 귀금속이 유출입하는 이유를 은행권의 과잉유통에서 찾았는데, 이 과정에서 그들은 금속화폐도 가치표장과 마찬가지로 그것의 양에 의해 감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은행권을 신용화폐로 인식한 반지금논자와 은행주의자는 은행권이 과잉으로 유통될 수 없으며, 귀금속은 그것이 감가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본이기 때문에 유출입한다고 주장하였다.¹⁾ 한편 마르크스는 이들 논쟁을 검토하면서 지폐 유통의 법칙과 은행권 유통의 법칙을 구

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마르크스가 은행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정치경제학계에는 현대 화폐를 불환(국가)지폐로 인식하는 견해²⁾와 신용화폐로 인식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후자의 견해가 수적인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전의 논문(최진배 ; 1996b)에서 마르크스가 은행권을, 그것의 태환 유지 여부를 불문하고, 가치표장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태환의 문제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폐 유통의 법칙과 은행권 유통의 법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이 과제로 남는다. 이 글의 목적은 마르크스가 두 개의 법칙을 구분한 이유와 의미를 밝히는 데에 있다.

2. 지폐 유통의 법칙

1) 법칙의 내용

태환이 정지된 지폐를 가치표장으로 인식하는 마르크스는 지폐가 과잉으로 유통할 경우 감가하게 된다고 주장한다.³⁾ 예컨대 그는 지폐의 유통과 관련하여 “지폐 유통의 독자적인 법칙은 오직 금에 대한 지폐의 대리관계로부터만 생겨날 수 있다”(K. Marx ; 1989 : p. 158)⁴⁾고

* 이 글은 1996년 11월 한국사회경제학회 제 37회 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한 필자의 논문(최진배 ; 1996c)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1) 그러나 은행주의자는 반지금론자와는 달리 불환은행권이 감가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은 견해를 달리한다. 이와 관련된 논의로는 최진배(1996c) 참조.

2) 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현대 화폐를 가치표장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3) 상세한 논의는 최진배(1996c) 참조.

4)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지폐’란 전후 관계로부터 알 수 있듯이 ‘불환’지폐를 가

주장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폐 유통의 독자적 법칙’이란 가치표장인 지폐가 태환이 정지된 상태에서 과잉으로 유통된다면 감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⁵⁾ 따라서 “지폐의 발행은 실제로 유통되었을 금량(또는 은량)을 지폐가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K. Marx ; 1989 : p. 158)고 주장한다.

지폐가 자기의 한도(곧, 실제로 유통하였을 명칭의 금주화의 양)를 초과한다면, 지폐의 신용이 일반적으로 손상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폐는 상품 유통의 내재적 법칙에 의하여 규정되는 금량만을 대표하게 될 것이다(K. Marx ; 1989 : p. 159).

여기서 ‘상품 유통의 내재적 법칙에 의하여 규정되는 금량’이란 “상품의 가격총액과 화폐의 평균속도에 의하여 규정”(K. Marx ; 1989 : p. 153)되는 금량 또는 화폐 유통의 법칙에 의하여 규정되는 금량을 의미한다. 따라서 만약 지폐가 이 양, 즉 이 ‘한도’를 초과하여 유통되면 그 것은 자신이 표면에 표시하고 있는 금량을 더 이상 대표하지 못하게 된다.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가치표장이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금량은 그것이 명목적으로 대표하는 금량에 미치지 못하고 감가한다.

지금 논쟁과 통화논쟁의 참가자들은 불환지폐의 유통이 유통하는 상품의 가격총액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점을 부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음 두 가지 잘못을 범하고 있다. 하나는 그들의 주장이 불환지폐가 유통수단으로서만 유통된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논의가 유통량이 증가하면서 지폐가 감가하였다

리킨다는 점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5) 마르크스는 ‘강제적 통화의 현상들’로서 18세기 강제통용력을 가진 지폐의 유통이 준 경험을 들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태환의 정지 또는 태환의 제한과 관련되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K. Marx(1969 : p. 169) 참조.

는 경험적 사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점이다.⁶⁾

일반적으로 정부는 자신의 필요와 지출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불환지폐를 발행한다. 이에 따라 그것은 유통계의 외부로부터 유통계의 내부로 강제적으로 투입되는데, 이 때 그것은 유통수단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그것의 투입이 증가하면 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가 야기되고 그리고 물가도 자극된다. 여기서 우리는 불환지폐의 유통이 과잉으로 되는 이유가 그것이 강제적으로 투입된다는 사실에서 연유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그것이 화폐의 다른 기능(예컨대 퇴장수단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가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유통과정에 투입되고 그리고 유통계 내에서 유통수단으로서만 기능하도록 강제되기 때문에 불환지폐가 감가되는 것이다. 이 점을 간과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폐가 항상 유통의 수료를 예운다고 주장하게 된다.

흄(D. Hume)을 비판하면서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금과 은 그것들이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유통 이외의 모든 법칙은 도외시하더라도, 다만 일정량의 금과 은만이 상품들의 어떤 주어진 집계액의 등가물로서 유통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만약 상품의 총 가치와는 관계없이 한 나라에 존재하는 임의의 모든 금과 은이 유통수단으로서 상품교환에 들어가야 한다면, 금과 은은 아무런 내재적 가치도 가지지 않고 그리고 사실상 현실적인 상품이 아니다. 이것이 흄의 세 번째 ‘필연적 귀결’이다. 흄에 의하면 가격이 없는 상품들과 가치 없는 금과 은이 유통과정에 들어간다. 따라서 그는 상품들의 가치와 금의 가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그들의 상대적인 양에 대해서만 말한다(K. Marx ; 1969 : pp. 163~164).

6) 예컨대 폴라턴은 불환지폐의 발권력이 남용되지 않은 사례가 역사적으로 한 건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자세한 설명은 J. Fullarton(1969 : pp. 23~24) 참조.

우리는 지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것이 가치표장이라면 일정시점에서 그것이 대표하는 금량은 주어져 있을 것이며 따라서 일정량의 지폐만이 '상품의 어떤 주어진 집계액의 등가물로서 유통'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점에서 존재하는 지폐량이 모두 상품 교환에 들어간다고 상정하는 것은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이라고 또는 가치표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유통하는 화폐 금의 양이 증가 혹은 감소하기 때문에 상품의 가격이 상승 혹은 하락한다는 흄의 주장에 대한 마르크스의 다음 비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유통수단의 양과 상품의 가격변동의 관계에 대한 모든 과학적 연구는 화폐재료의 가치를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흄은 귀금속 가치의 변혁, 따라서 가치 척도의 변혁의 시기만을 고찰한다(K. Marx ; 1969 : p. 160).

마르크스의 이러한 지적은 지폐의 양과 상품가격의 변동의 관계를 고찰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 지폐는 과잉으로 유통되면 감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폐의 양과 상품가격의 변동의 관계를 고찰할 경우 우리는 가치표장으로서 지폐가 대표하는 금량이 일정 시점에서 주어져 있는 것으로 전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다고 하면 불환지폐의 유통량도 금속화폐나 태환은행권의 유통량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화폐유통의 법칙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불환지폐의 유통량은 화폐유통의 법칙에 의하여 결정된 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유통계의 외부로부터 강제로 투입되고 거기서 유통수단으로서 유통하도록 강제되기도 하기 때문이다.⁷⁾ 금속화폐의 유통량이나 태환은행권

7) 불환국가지폐는 유통계의 외부로부터 강제적으로 투입하여 그것을 유통수단으로 유통시킬 필요에 의해 고안되었으며, 1930년대 이후 은행권의 태환을 항

의 유통량과는 달리 지폐의 유통량이 화폐유통의 법칙에 의해 규정되는 유통량을 초과하고 지폐가 감가하게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지폐 유통의 특수성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⁸⁾

2) 기존 논의의 검토

마르크스는 지폐의 유통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한다.

국가가 발행하고 합법적인 가치가 부여된 지폐는 가치표장의 발달된 형태이며, 금속유통으로부터 또는 단순상품유통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유일한 지폐형태이다(K. Marx ; 1969 : p. 116).

여기서 지폐가 ‘금속유통으로부터 또는 단순상품유통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유통수단으로서 화폐의 기능에 그것의 발생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그것의 발생 근거와 관계없이 그것은 가치표장(=화폐)이기 때문에 화폐의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일정 시점에서 지폐가 대표하는 금량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폐의 유통량도 화폐 유통의 법칙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러나 태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통계의 외부로부터 강제적으로 투입되어 유통수단으로 기능하도록 강제될 수 있기 때문에 지폐의 유통량은 화폐 유통의 법칙에 의하여 결정된 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지폐가 그것의 양에 의해 감가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구적으로 정지시킨 목적도 또한 여기에 있다.

8) 여기서 우리는 실현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는 논의로 한다. 국가가 실현과정에 개입하게 되는 이유는 유통수단으로서 지폐의 유통이 저조한데 있지만, 여기서 문제로 하는 것은 유통수단으로서 그것의 과잉 유통이기 때문이다. 물론 실현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에는 지폐의 투입이 항상 그것의 감기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태환은행권의 유통법칙과 대비되는 지폐의 유통법칙이란 유통수단으로서 지폐 유통의 특수성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즉 지폐가 유통수단으로서 유통되기 때문에 그것의 유통량이 증가하면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과잉으로 유통될 경우 태환의무를 지지 않는 지폐는 감가하게 된다.⁹⁾

그러나 우리는 일정 시점에서 존재하는 지폐량과 상품유통의 내재적 법칙에 의하여 규정되는 금량과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지폐의 감가현상을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하여 사후적으로 지폐가 감가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경우 우리는 지폐가 가치 없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논의를 전개한다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일본에서 그렇듯이 상품 유통의 내재적 법칙에 의하여 규정되는 금량을 확정한 후 그것을 현존하는 지폐량과 대비하여 지폐가 대표하는 금량을 확정하려는 시도가 존재한다.¹⁰⁾ 이러한 시도는 지폐를 가치 없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일정 시점에서 존재하는 지폐가 모두 유통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유통하는 상품의 가격총액 또는 ‘상품유통의 내재적 법칙에 의하여 규정되는 금량’은 일정 시점에서 존재하는 지폐량과는 독립적으로 결정되며, 전자가 결정된 후 사후적으로 유통에 필요한 지폐량이 결정된다. 또는 보다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상품이 유통

9) 태환은행권 유통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이 글의 3장을 참조.

10) 여기서 우리는 유통필요금량설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맴,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할 경우 그러하듯이 지폐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가치량은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감가하게 된다는 인식이나, 상품의 가치가 불완전하게 실현됨에도 불구하고 창조된 화폐량은 이에 비례하여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감가하게 된다는 인식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시도에 포함된다. 일본의 유통필요금량설에 대한 논의로는 生川榮治(1984), 高木暢哉(1971), 貞藤素一(1976), 松井安信(1978), 荒牧正憲(1980), 竹村攸一(1980) 등을 참조. 그리고 지폐의 감가현상을 사회간접자본의 건설문제와 관련시키는 논의로는 生川榮治(1982) 등을 그리고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량의 화폐만이 파괴되기 때문에 화폐가 감가한다는 논의로는 M. Aglietta(1979) 등을 참조.

될 때 이렇게 결정된 지폐량만을 흡수하기 때문에 일정 시점에서 존재하는 지폐량이 모두 유통계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폐를 가치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모든 지폐가 유통계 내에 머무르게 된다고 주장하게 된다.

각 상품은 유통계에 들어오면서 당시의 지폐로 자신의 가치를 표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정 시점에서 유통하는 상품의 가격총액을 이론적으로는 계산해낼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유통화폐량도 계산해낼 수 있다. 일정 시점에서 지폐가 대표하는 금량은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지폐를 유통계에 투입하면, 지폐 유통량은 유통되는 상품의 가격총액에 의하여 규정되는 유통화폐량을 초과하게 된다. 물론 새롭게 투입되는 지폐는 이미 유통계 내에 머무르고 있는 지폐와 전혀 구분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과 동일한 가치를 대표하는 것으로 유통계에 진입한다.

이 때 만약 추가로 투입되기 이전에 유통하는 상품의 가격총액에 의해 규정된 모든 지폐가 상품과 교환되려고 한다면, 상품의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¹¹⁾ 그러나 모든 상품의 가격이 동일한 비율로 상승하거나, 모든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아니다. 지폐가 강제로 투입될 때 그것은 유통되고 있는 모든 상품을 골고루 구입하려고 예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폐는 자연히 투입되는 목적에 따라 특정 상품을 집중적으로 구입하게 되는데, 그 결과 이 특정 상품(들)의 가격이 먼저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지폐의 투입과 특정 상품(들)의 구입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그 상품(들)의 가격은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이 상품(들)이 원재료라면 그것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상품의 가격이, 임금제라면

11) 비록 일부가 상품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상품과 교환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양을 훨씬 초과하여 지폐가 강제로 투입된다면 동일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실질임금수준이 점차 그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양의 지폐로 이전보다 적은 가치량의 상품 밖에 구입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 또는 같은 말이지만 지폐가 감가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

지폐의 투입 효과는 서서히 그리고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확인되기 때문에 정부는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단 지폐가 감가되었다는 사실이 일상적인 과정에서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정부는 이전과 같이 용이하게 개입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된다. 그리고 정부의 개입은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지폐의 가치가 저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현대 화폐를 불환국가지폐로 인식하는 일본의 학자들은 오늘날 태환이 정지되고 국가의 개입이 본격화하면서 화폐의 유통량이 끊임없이 증가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의 가치가 끊임없이 저하한다는 현실을 중시한다. 그들에 의하면 태환은행권은 신용화폐인데, 태환정지와 함께 그것의 유통을 보증하는 것은 국가로 되었다. 즉 태환정지와 함께 태환은행권은 강제통용력을 가진 국가지폐로 변화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태환은행권의 과잉 유통을 규제하는 유력한 장치인데 이제 태환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그것의 과잉 유통을 규제할 근거도 사라지게 되었다. 태환정지와 함께 신용화폐가 불환국가지폐로 성격이 변환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태환을 태환은행권의 유통량을 규제하는 유력한 장치로 간주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태환은행권의 유통량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것 또는 그것의 유통량을 유통하는 상품의 가격총액에 맞게 조절하는 것은 결코 태환이 아니다. 한편 태환 정지된 은행권이 가치표장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국가지폐의 유통

량이 신축하며 그것의 유통이 화폐유통의 법칙에 따른다는 점을 부정하게 된다.

3. 은행권 유통의 법칙

1) 환류의 법칙

환류의 법칙은 통화와 자본이 구분된다는 주장과 함께 은행주의자들이 태환은행권 유통의 특수성을 해명하는 핵심 개념이다. 그리고 태환은행권의 유통이 지폐의 유통과 다르다는 주장은 그들을 통화주의자로부터 구분하는 요체이다. 지금 논쟁과 통화논쟁을 검토하면서 마르크스도 태환은행권 유통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마르크스와 은행주의자들의 차이점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가 의미하는 태환은행권 유통의 특수성은 무엇이며 그것은 은행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환류의 법칙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환류의 법칙은 은행주의자들의 핵심적인 논리의 하나로서 투크뿐 아니라 폴라턴도 환류에 의해 태환은행권 유통량이 규제된다는 점을 중시한다. 예컨대 폴라턴은 “국내 통화를 규제하는 위대한 원칙은 환류이다”(J. Fullerton ; 1969 : p. 68)라고 하면서 과잉 은행권을 조절하는 힘으로서 태환보다도 환류를 더 중시한다(J. Fullerton ; 1969 : p. 67).

태환은행권이 환류된다는 그들의 주장은 태환은행권의 발행방식에 근거하고 있다. 즉 태환은행권은 은행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본의 요구에 응하여 발행되며, 일정한 대가 즉 이자를 받고, 일정 기간 대부되기 때문에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반드시 은행으로 환류하게 된

다. 이러한 주장의 의미는 은행이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은행이 어음을 할인하여 태환은행권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자본가가 어음의 할인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한편 어음은 유통기한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한이 만료되면 어음의 발행자는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유가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차입자는 약정된 기일이 도래하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유가증권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의 경우와는 달리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 태환은행권의 유통이 상품의 유통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유통의 결과를 반영한다는 점도 또한 명확해진다. 어음은 상품을 신용으로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행되고 유통되기 때문이다. 즉 상품이 유통되기 때문에 어음이 유통되는 것이지, 어음이 유통되기 때문에 상품이 유통되는 것은 아니다.

태환은행권의 환류에 관한 그들의 논의는 태환은행권이 퇴장한다는 주장에 의해 보완된다. 자본가들은 당장 필요로 하지 않는 태환은행권을 은행가에게 맡긴다고 하면서 폴라턴은 태환은행권도 퇴장한다고 주장하는데,¹²⁾ 퇴장된 태환은행권은 물론 상품의 가격이나 환율에 결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가격과 환율에 관한 한 은행가의 금고 속에 준비금으로서 축적된 은행권은 광석 안에 들어 있는 금이 그렇듯 이 거의 영향을 미칠 수 없다.”(J. Fullerton ; 1969 : p. 43)!¹³⁾ 이러한 주장은 태환은행권 유통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태환은행권의 유통량이 증가한다 또는 태환은행권 유통량이 유통하는 상품의 가격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12) 그는 이렇게 말한다. “(자본가는) 그들(당장 필요 없는 태환은행권)을 자신의 은행가에게 맡길 뿐이다. — () 안은 인용자.”(J. Fullerton ; 1969 : p. 67).

13) 여기서 은행권은 태환은행권을 가리킨다.

통화주의자들은 경기의 순환과정에서 상품의 가격이 상승 하락하는 현상이 태환은행권의 유통량이 팽창하고 수축하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전제 하에 태환은행권의 유통량을 규제하고자 하였다.¹⁴⁾ 그러나 만약 은행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환류의 법칙에 의하여 태환은행권의 유통이 규제된다면 은행법 개정은 전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본의 운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환류의 법칙은 통화주의자들의 주장을 논박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 태환은행권의 기능

기업이 어음을 할인하는 목적은 자기 자본의 화폐형태를 앞당기고 자기가 주는 신용을 자기가 받는 신용으로 상쇄하여 재생산과정을 원활하게 하거나 재생산의 중단을 회피하려는 데 있다. 즉

보통의 사업가가 어음을 할인받는 것은 자기의 자본의 화폐형태를 앞당기는 것에 의해서 재생산과정의 진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자기의 사업을 확장시키거나 추가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는 신용을 자기가 받는 신용에 의해서 상쇄하기 위한 것이다(K. Marx ; 1990 : p. 522).

여기서 마르크스가 주장하고자 한 것은 어음할인에 의해 결코 추가자본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¹⁵⁾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문제와는 별개로, 할인으로 획득된 태환은행권이 자본의 순환과정에 투입된다는

14) 이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은 최진배(1995b) 참조.

15) 이와 관련된 논의로는 최진배(1995b) 참조.

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본의 순환과정에서 태환은행권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 즉 유통수단으로서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지불수단으로서 가능할 것인지는 선형적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순조롭게 순환운동을 하려는 자본이 그때 그때의 재생산상의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한다.¹⁶⁾

태환은행권이 유통수단으로 기능할 경우 태환은행권의 공급이 증가하면 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가 야기되고 그리하여 상품의 가격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것은 어음의 할인으로 발행된다고 해도 태환은행권이 유통수단으로서 기능한다면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류의 법칙이나 진성어음이론(real bill doctrine)이 지금논쟁 아래 계속 비판을 받은 것은 바로 이러한 가능성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매우 일면적이다. 태환은행권이 자본의 순환과정에서 항상 구매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¹⁷⁾

태환은행권이 지불수단으로서 기능하면 비록 그것의 유통량이 증가해도 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가 야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불수단으로서 기능하는 태환은행권은 구매수단으로서 기능할 때와는 달리 유통과정을 종결지을 뿐 상품의 유통을 매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불수단으로서 화폐의 유통에 대해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 우리가 고찰하는 특수형태의 화폐는 유통되거나 유통에 들어가지만 유통수단으로서 기능하지는 않는다. 유통수단으로서 화폐는 항상 구매수단이었지만 지금 그것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K. Marx ; 1969 : p. 138).

16) 이와 관련된 논의는 최진배(1995a) 및 최진배(1996a) 참조.

17) 태환은행권의 공급량과 상품가치의 총량을 비교하는 방식이 가지는 문제점은 2장에서 논의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부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어음의 할인으로 유통되는 태환은행권이 지불수단으로 기능한다면 환류의 법칙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어음을 은행이 할인하면 어음을 발행한 자본가는 자신의 채무를 은행에게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면 어음의 할인으로 유통되게 된 태환은행권은 곧장 은행으로 환류한다. 그리고 태환은행권 유통액이 증가해도 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가 야기되지 않고 상품의 가격도 상승하지 않는다. 그러나 태환은행권이 구매수단으로 기능하면 환류의 법칙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무엇보다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주의자들은 태환은행권이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태환은행권을 신용화폐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¹⁸⁾ 그리고 태환은행권이 소득의 유통을 매개하지 않고 자본의 이전을 매개하기 때문에 그것의 유통량이 증가해도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태환은행권이 자본의 유통을 매개하는 것도 그것이 신용화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에 의하면 태환은행권의 유통량이 상품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가치표장=화폐’로서 그것이 지불수단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은행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태환은행권 유통의 특수성이란 신용화폐로서 그것의 성질에서 연유하지만,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태환은행권 유통의 특수성이란 그것이 가치표장, 즉 화폐로서 지불수단으로서 유통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연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 예컨대 폴라턴은 거래과정에서 은행권을 수수해도 그것이 발행은행으로 환류되어 화폐와 교환될 때까지 거래는 종결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최종적인 청산의 이러한 필요성이 신용거래의 핵심이다……이것이 신용의 유통과 화폐의 유통을 구분하는 주요 구분점이다. 이러한 구분은 다른 모든 형태의 신용뿐 아니라 은행권에도 아주 동일한 방식 그리고 동일한 정도로 적용된다.”(J. Fullerton ; 1969 : p. 37).

3) 기존 논의의 검토

마르크스는 태환은행권의 발생을 화폐의 지불수단 기능과 관련지우고 있다.

진정한 화폐가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에서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용화폐는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에 그 자연발생적 근원을 가지고 있다(K. Marx ; 1989 : p. 158).

그리고 환류의 법칙이나 통화와 자본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을 검토함에 있어 그는 태환은행권이 지불수단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중시한다. 그렇지만 그는 태환은행권을 단순한 신용화폐로 인식하지 않는다. 즉 그는 태환은행권을 가치표장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것이 유통수단 및 퇴장수단으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도 아울러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의 유통량이 화폐유통의 법칙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생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마르크스가 말하는 불환지폐의 유통법칙과 대비되는 태환은행권 유통법칙이란 지불수단으로서 기능하는 화폐유통의 특수성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즉 그것은 구매수단으로서 유통하는 화폐와는 달리 상품의 유통을 매개하지 않고 일반적 상품으로서 유통과정을 종결지을 뿐인, 따라서 비록 그것의 유통량이 증가해도 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가 야기되지 않으며 태환은행권의 감가도 초래하지 않는, 지불수단으로서 화폐유통의 특수성을 가리킨다.

마르크스가 환류의 법칙과 퇴장 가능성을 수용했다는 주장은 많은 경우 마르크스가 은행주의자의 하나라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양자 사이에는 많은 편차가 존재한다.

예컨대 아논(A. Arnon)은 마르크스가 화폐의 퇴장기능을 매우 중시했다고 하면서 마르크스의 화폐론에 있어 퇴장수단 기능이 가지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마르크스 화폐이론의 ‘완성’은 수량설의 부정이 아니라 유통 C - M - C로부터 야기되는 화폐의 제3의 기능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며, 그것과 연관된 퇴장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다.”(강조 원문, A. Arnon ; 1984).

마르크스는 화폐의 퇴장 기능을 중시하였으며, 이것은 지금론자와 통화론자들이 신봉하고 있던 화폐수량설을 비판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은행주의자들의 주장과 마르크스의 주장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은행학파는 태환은행권이 신용화폐이기 때문에 퇴장한다고 주장한다. 즉 태환은행권을 가치표장으로 인식하는 그리하여 그것의 감가 가능성성을 주장하는 통화학파에 대한 대응논리를 제시하는 가운데 그들은 태환은행권이 결코 가치표장이 아니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논리선상에서 신용화폐로서 태환은행권이 퇴장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반해 마르크스는 신용화폐와 화폐를 엄격하게 구분한 위에서 태환은행권을 ‘화폐=가치표장’으로 인식하고 태환은행권이 가치표장으로서 화폐의 모든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하는데 바로 이러한 논리선상에서 마르크스는 화폐가 퇴장수단으로서 기능한다고 주장한다. 즉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태환은행권의 퇴장수단 기능이란 화폐로서 그것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 기능의 하나이다.

한편 에르가스(H. Ergas)와 피쉬맨(D. Fishman)은 마르크스가 환류의 법칙을 중시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마르크스는 은행학파의 견해를 수용하였는데, 그들의 저작에 대해 그는 이렇게 썼다. ‘……진실로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진 유일한 분야인 유통에 관한 보다 새로운 영국의 저작들……’(Grundrisse, Penguin ed., p. 882). 그리고 자본론 3권

에서 신용제도 하에서 통화의 역할을 논의할 때 그는 플라턴의 환류의 법칙을 되풀이하였다. 즉 ‘은행권 유통량은 상업의 필요에 의하여 규제되며 모든 과정으로 된 은행권은 발행자에게 즉시 환류한다.’(*Capital 3*, p. 615)”(H. Ergas and D. Fishman ; 1975).¹⁹⁾

그러나 은행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환류의 법칙이란 태환은행권의 신용화폐로서의 유통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것은 마르크스가 말하는 태환은행권 유통의 법칙과는 다르다. 태환은행권 유통량이 유통하는 상품의 가격총액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할 때, 마르크스는 태환은행권이 신용화폐로서 유통할 뿐 아니라, 즉 지불수단으로서 기능할 뿐 아니라 유통수단(및 퇴장수단)으로서도 기능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프랑스 조절이론은 현대 은행권을 신용화폐로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용화폐의 생과 사’를 설명하는 드 브로이(M. De Vroey)의 주장이 분명히 하듯이—그것이 구매수단으로서만 유통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신용화폐가 퇴장할 수 있다는 점을 완전히 간과하고 있다는 한계도 안고 있는데, 이 때문에 그들은 현대은행권을 신용화폐가 아니라 불환국가지폐로서 파악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²⁰⁾

현대 화폐를 불환은행권으로 인식하는 일본의 학자들은 태환이 정지되었다는 점 말고는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때 그들은 태환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유통량이 여전히 신축한다는 점을 매우 중시한다. 즉 은행이 대출하고 차입자가 채무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불환은행권 유통액이 신축적으로 조정된다고 주장한다. 불환은행권 유통의 신축성을 화폐로서 그것의 기능과 관련하여

19) 여기서 인용된 자본론에서 말하는 은행권은 태환은행권이다.

20) M. De Vroey(1981), A. Lipietz(1990) 그리고 개괄적인 설명으로는 정신동(1990)을 참조.

파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들은 반지금논자(및 은행주의자)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불환은행권의 유통량을 규제하는 것은 이러한 외적 장치가 아니다. 그것의 유통량을 규제하는 것은 화폐유통의 법칙 그것이다.²¹⁾

4. 결론

불환지폐의 유통법칙과 태환은행권 유통법칙의 차이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속되는 것처럼 보인다. 국가가 화폐를 유통계에 투입할 경우 그것은 거의 언제나 일차적으로는 추가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물가를 자극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은 실현과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본격화하면서 보다 분명해졌다. 이에 반하여 은행이 공급하는 화폐는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우세하다. 최소자본규모가 거대화하면서 자본의 은행제도에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 과정에서 은행이 공급하는 화폐의 구매수단으로서의 기능도 중요해졌다. 그러나 신용거래가 증가하고 그리고 다양화하면서 은행과의 거래에 있어 화폐는 채무를 청산하기 위해 유통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졌다. 예컨대 수표제도의 발달, 신용카드의 이용 증가와 각종 이체제도의 발달 등은 유통수단으로서 화폐의 유통을 극도로 억제하는 반면에 지불수단으로서의 유통을 우세하게 한다. 한편 은행차입금이 일차적으로 구매수단으로서 유통과정에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만기의 도래와 함께 그것은 은행에 상환되어야 하는데 이 때 그것은 지불수단으로서 기능한다. 신용(제도)의 발달과 함께 화폐의 지불수단 기능이 우세해진다는 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타당하다.

21) 일본에서의 논의에 대해서는 飯田 繁(1961), 飯田 繁(1962), 飯田 繁(1983), 高木暢哉(1980), 岡橋 保(1968), 岡橋 保(1985), 荒牧正憲(1980) 등을 참조.

환류상의 차이도 여전히 존재한다. 국가가 방출한 화폐는 조세 등을 통해서만 국가에 환류된다. 이에 반해 은행은 화폐를 선대할 뿐이기 때문에 선대된 화폐는 만기가 도래하면 은행에 환류된다. 마지막으로 투입의 강제성 또는 외부성 문제도 여전히 존재한다. 국가가 공급하는 화폐는 유통의 외부에서 내부로 강제로 투입되지만 신용제도는 자본의 요구를 수동적으로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화폐를 공급한다.

국가가 공급하는 화폐의 유통과 은행이 공급하는 화폐의 유통 사이의 이러한 차이점은 금속유통을 대신해서 유통되고 그리고 신용화폐로서 유통에 들어온다는 각자의 탄생 배경과도 어울린다. 그러나 지폐 유통의 특수성은 유통수단으로서 화폐 유통의 특수성과 그리고 태환 은행권 유통의 특수성은 지불수단으로서 화폐 유통의 특수성과 각각 관련되는 것이며, 불환지폐의 유통법칙과 태환은행권 유통법칙이 화폐의 유통법칙과 구분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불환지폐나 태환은행권은 모두 가치표장(=화폐)로서 화폐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며, 불환지폐의 유통량이나 태환은행권 유통량도 모두 유통하는 상품의 가격총액에 의하여 규정된다.

참고문헌

- 정신동(1990), 『조절이론에 관한 일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진배(1995a), 「화폐수량설과 금융정책의 효과 : 인식방법을 중심으로」, 『무역 평론』, 제2집, 경성대학교 무역연구소.
- _____ (1995b), 「통화 논쟁과 마르크스」, 『사회경제평론』 제8집, 한국사회경제학회.
- _____ (1996a), 『해방 이후 한국의 금융정책』, 경성대학교 출판부.
- _____ (1996b), 「은행권과 태환」, 제35회 연구발표회 『연구논문집』, 한국사회경제학회.
- _____ (1996c), 「금속화폐 지폐 그리고 태환은행권」, 제37회 연구발표회 『연구논문집』, 한국사회경제학회.
- 岡橋 保(1968), 貨幣流通法則の 研究, 日本評論社.
- _____ (1985), 現代信用理論批判, 九州大學出版會.
- 高木暢哉(1971), 現代不換通貨の 價値, 未來社.
- _____ (1980), 現代の 貨幣金融, ミネルヴァ書房.
- 大内力(1978), 信用と 銀行資本, 東京大學出版會.
- 飯田 繁(1961), 現代銀行券の 基礎理論, 千昌書房.
- _____ (1962), 兌換銀行券と 不換銀行券, 千昌書房.
- _____ (1983), 不換銀行券 物價の 論争問題, 千昌書房.
- 飯田裕康(1978), “信用の 必然性,” 川合一郎 編, 現代信用論(上), 有斐閣.
- 牛川榮治(1984), 信用理論の 體系, 有斐閣.
- _____ 編, 現代の 金融資本, 선경식 역(1982), 『현대금융자본론』, 동녘.
- 松井安信(1978), “不換通貨論,” 川合一郎 編, 現代信用論(上), 有斐閣.
- 竹村攸一(1980), “價格の 度量標準と 流通必要金量の 概念,” 高木暢哉 編, 現代の 貨幣金融, ミネルヴァ書房.
- 眞藤素一(1976), 國際通貨と 金, 日本評論社.
- 下平尾勳(1977), 信用と 景氣循環, 新評社.
- 荒牧正憲(1980), “不換銀行券論争の 現代的 意義,” 高木暢哉 編, 現代の 貨幣金融, ミネルヴァ書房.
- M. Aglietta(1979), *The Theory of Capitalist Regulation*, translated by D.

- Fermbach, NLB.
- A. Arnon(1984), 'Marx's Theory of Money : the Formative Years'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16 : 4.
- M. De Vroey(1981), 'Money and Inflation in Intensive Accumulation', *Draft*.
- H. Ergas and D. Fishman(1975), 'The Marxian Theory and the Crisis of Capital', *Bulletin of the Conference of Socialist Economists*, Vol.IV 2(11).
- J. Fullarton(1969), *On the Regulation of Currency(the second edition)* August, M. Kelly Publishers.
- A. Lipietz, *Mirages et Miracles*, 김종한 역(1990), 『기적과 환상』, 한울.
- K. Marx(1969),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Lawrence & Wishart : London.
- _____, *Capital I*, 김수행 역(1990), 『자본론 I』, 비봉출판사.
- _____, *Capital III*, 김수행 역(1990), 『자본론 III』, 비봉출판사.